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상 임 위 원 회

###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법률안 제2조 제11호 아목과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률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및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는 현행법과 같이 수사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법률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법률안 제15조의2 제6항 및 제20조 제1항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일체를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유

### I. 의견표명의 배경

위 법률안의 내용은 통신제한 조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인권에 관한 중요한 법률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법률안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 II. 판단 및 참고기준

#### 1.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37조 제2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제19조

## 2. 참고기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2007. 12. 17. 결정)

## Ⅲ. 판단

### 1.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의 추가(법률안 제2조제11호아목)

법률안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한 위치정보가 범인의 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의 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위치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첫째,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07. 12. 17.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GPS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 등 GPS 응용제품을 사용하는 자의 위치정보가 근접 5미터 거리까지 세밀하게 추적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수사대상자의 내밀한 사생활 정보까지 추적되고 공개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수사기관은 GPS 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는 범인검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하나, 최근 촛불집회시위의 수사에서 위치정보 추적 대상자를 넓게 지정하고, 매 10분단위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의 효율성만을 이유로 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가 오·남용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개인이 특정시간, 특정위치에 머물렀던 정보는 사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은밀한 부분으로서,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일반 개인식별 정보에 비하여 고도로 민감한 프라이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필요와 의도에 따라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마저 실시간으로 수집·이용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히 파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 제2조 제11호 아목과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의 개선(법률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법률안은 「금융실명거래보장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금융거래내역자료 제공에 대한 통지절차를 원용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가입자에게 이러한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의 방법도 서면 외에 전자우편 등의 간편한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통지누락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수사기관이 아닌 전기통신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나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국가(수사기관)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받은 것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통지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과 같이 통지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해 가입자의 정보를 이용·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업무에 협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통지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가입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국가를 대신하여 인권 침해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여, 결과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 받게 될 우려도 있다.

둘째, 법률안은 통지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지내용이 가입자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정보주체의 알권리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물론, 국민의 알권리 및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통지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도 있으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는 현행법과 같이 수사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 의무 신설(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신설)**

법률안은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되,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제한조치(감청 등)에 관련된 장비를 구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법률안은 통신제한 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구비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신서비스 기술을 감청에 적합하게 개발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종국적으로 가입자에게 감청에서 자유로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마저 박탈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법률안은 종래 통신제한조치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의 단순한 협조의무를 법적의무로 강제하면서 감청장비구비 비용까지 사업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당히 전가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다 할 것이다.

둘째, 법률안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의 구비의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 전화, 화상전화, 인터넷 메신저, 인터넷 채팅 등 사실상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합법적 감청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감청장비 설치의무 대상사업자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ommunication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of 1994)」이나 감청 대상 정보를 제한하려는 EU의 Directive 2006/24/EC와 비교해도 정보의 과잉수집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의 구비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또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의무 부여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률안 제15조의2제6항, 제20조제1항)**

현행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를 의무로 하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유출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정보를 과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여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

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첫째,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범죄를 해결한다는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목적을 위해 일반 국민의 통신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비밀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취지에 반함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는데, 부가통신사업자와 같은 영세사업자까지 감청장비의 구비의무 부과와 더불어 장기간의 보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기술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내용을 위·변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것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로그기록 보관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안 제15조의2 제6항 및 제20조 제1항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일체를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009. 1. 22.

위원장 안 경 환

위원 최 경 숙

위원 유 남 영

위원 문 경 란

위 정본입니다.

2009. 2. 2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이 경 우 (인)